



##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

이번 호에는 정부부처가 2018년에 시행할 예정인 239건의 달라지는 주요제도 중 여성·가족 관련 일부 내용을 담았습니다.

아래는 여성·가족 관련 21가지 중 6가지 주요제도입니다. 보다 상세한 다른 부처·분야별 주요제도는

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『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』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 0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서비스(영상삭제 등) 개시

- 추진배경 디지털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, 범죄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지원이 미흡해 삭제·지원 등 피해자 지원 필요
- 주요내용
  - ① ‘여성긴급전화 1366’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창구(gateway)로 운영
  - ② 경찰 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 삭제 지원
  - ③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실시
  - ④ 전문적인 상담, 의료비, 무료법률서비스 등 지원
- 참고: 지원문의·여성긴급전화(1366)
- 시행일 2018년 상반기
- 시행기관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



### 02 ‘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’ 본격 운영

- 추진배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제고로 여성고용 확대
- 주요내용
  - ① 직업교육훈련 신청: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서도 교육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편
  - 개편 전: 직업교육훈련 센터 방문 신청 → 개편 후: 온라인 교육 신청
  - ② 인턴 온라인 접수: 인턴 채용 절차 등 관련 정보는 항상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신청자를 오프라인과 병행하여 접수
  - ③ 구직자 이력관리시스템 구축: 구직자의 직업교육훈련, 인턴십, 취업연계 정보 등의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
  - ④ 일자리정보 공개: 워크넷 일자리 정보 등을 공개하는 ‘일자리 정보코너’ 개설
- 참고: 여성가족부 홈페이지>뉴스·소식>보도자료>새일센터 취업정보서비스 오픈
- 시행일 2018년 1월
- 시행기관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



### 03 출산 전·후 휴가급여 상한액(150→160만원) 인상

- 추진배경 '18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
- 주요내용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 100%을 휴가기간(90일)에 대하여 지원(상한 월 150만원, 하한 최저임금)
- \*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급
- 참고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정보공개 > 법령정보 > 입법·행정예고 > 출산전후휴가급여상한액인상고시안
- 시행일 2018년 1월 1일
- 시행기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



### 04 보육료 9.6% 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강화

- 추진배경 최저임금 인상,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한 보육료 지원 강화
- 주요내용
  - ① 모든 어린이집에 공동으로 지원하는 부모보육료 2.6% 인상
  - ② 민간·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지원하는 기본보육료 21.8% 인상
  - ③ '18년 1월부터 보육료 인상으로= 어린이집 안정적 운영 지원
- 시행일: 2018년 1월
- 시행기관: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



### 0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 (통상임금 60→80%) 인상

- 추진배경 일·가정 양립 및 '10 to 4' 더불어 돌봄실현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
- 주요내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,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
- 참고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정보공개 > 법령정보 > 입법·행정예고 >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참고
- 시행일 2018년 1월 1일
- 시행기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



### 06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지원 확대인상

- 추진배경 청소년이 근로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현장도우미가 현장을 방문하여 중재하는 등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
- 주요내용
  - ① 지원대상: 근로기준법상 근로(아르바이트)가 허용되는 청소년(13세~19세)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9세~24세
  - ② 지원내용
    - 사업주와의 현장면담을 통한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·부당처우 확인해결, 경찰·노동관서를 연계한 사건 처리 등
    - 근로청소년 기관 및 시설 등을 연계하여 근로청소년의 여건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(건강·진로·학업복귀·직업 등) 실시
  - ③ 이용방법: 청소년전화(1388) 및 문자상담(#1388) 청소년근로보호센터(02-6677-1429)를 통한 상담 및 지원
- 시행일 2018년 1월
- 시행기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



# 2018년 달라지는 여성·가족 관련 제도

달라지는 주요 제도	내용
간이한 친생추정 배제절차 마련	① 어머니 또는 전남편이 가정법원에 비송절차인 '친생부인의허가청구'를 통해 전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여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음 ② 생부가 가정법원에 비송절차인 '인지의허가청구'를 통해 자신의 자녀임을 증명하여 자녀의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 있음
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	국공립 450개소 확충(신축·공동주택리모델링·민간장기임차)
지자체가 설치·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완화	지자체가 설치·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입지관련 설치기준 완화 ※「모자보건법 시행령」개정 및 관련「고시」폐지 추진 중
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	①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(CYS-Net) 운영 지역 확대(224개→226개) ② 청소년동반자 확대(1,146명→1,261명) ③ 청소년쉼터 확대(123개→130개) ④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담요원 확충(30명→60명) 지원문의: 위기청소년 지원 및 상담 전화 ☎(지역번호)1388
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기관 확대	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확대(250개소→260개소) 지원문의: 방과후아카데미 홈페이지(www.youth.go.kr/yaca),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(02-330-2831~4)
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분야 확대	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분야 확대(6개분야→6개분야+위생)
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확대	① 꿈드림센터 확충(202개소→206개소) ②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센터 추가(7개소→8개소) 지원문의: 꿈드림 홈페이지(www.kdream.or.kr), 청소년 전화(1388)
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	①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시설 확대(295호→315호) ②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확충(26개소→28개소) ③ 성매매피해아동·청소년 지원센터 운영(7개소 신규 지정·운영) 지원문의: 여성긴급전화(1366)
여성고위공무원단·여성임원 목표제 도입	①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고위공무원단의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「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」를 최초로 도입하고 여성 비율을('17년) 6.1% → ('22년) 10%로 확대 ② 공공기관의 성 평등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「여성 임원 목표제」를 최초 도입하고 여성 임원 비율을('17년) 11.8% → ('22년) 20%로 확대 하여 OECD 평균(20.5%) 수준 달성
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확대	① 월지원금 확대('17년 월 1,298천원 → '18년 월 1,337천원) ② 간병비 확대('17년 월 평균 1,087천원 → '18년 월 평균 1,120천원) ③ 건강치료비 확대('17년 월 평균 390천원 → '18년 월 평균 780천원)
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역 확대	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역 확대('17년 66개 지역 → '18년 113개 지역) 이용문의: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familynet.or.kr.) ☎1577-9337
취약·위기가족 서비스 지원 강화	① (지원대상) 중위소득 72% 이하 한부모·조손가족 등 취약가족, 재난·사고 등을 경험한 긴급위기가족 ② (지원내용) 사례관리, 가족상담, 긴급가족돌봄, 학습·정서지원 등을 기본사업으로 하고, 외부자원연계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 제고 ③ (수행기관) 61개소 건가·다가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이용문의: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familynet.or.kr.) ☎1577-9337
한부모(미혼모·부 포함)가족 아동양육비 인상	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연령 확대 * ('17년) 월 12만원 → ('18년) 월 13만원 * ('17년) 만 13세 미만 → ('18년) 만 14세 미만 ②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* ('17년) 월 17만원 → ('18년) 월 18만원 문의: 한부모상담전화 1644-6621,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: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
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확대	① 시간제정부지원시간(가형~다형): ('17) 연 480시간 → ('18) 연 600시간 ② 시간제·영아종일제정부지원비율(가형~다형): ('18) 소득계층별 5%p상향 ※ 시간당 이용단가(돌봄수당): ('17) 6,500원 → ('18) 7,800원 * 아이돌봄 서비스: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지원문의: 아이돌봄 홈페이지(http://idolbom.go.kr) ☎ 1577-2514
미성년 자녀 정보이용료 알리미 서비스 전면 실시	① (문자발송 기준금액) 3천원, 5천원, 1만원, 1만5천원, 2만원, 2만5천원, 3만원, 4만원, 5만원, 6만원, 8만원, 10만원 ② (문자발송 내용) 010-XXXXX-XXXXX 님이 사용하신 정보이용료가 00원을 초과하였습니다 ※ 상기 기준금액을 넘을 때마다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휴대폰에 문자가 전송됨

2018



# 대전시정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

대전시는 매년 시민들에게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와 시책, 법률개정 등에 대한 정보를 담아 발간하고 있는데, 여기서는 '아동수당 지급' 과 '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' 제도를 소개합니다. 보다 상세한 다른 제도는 대전시에서 발간한 『2018년 대전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』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01 아동수당 지급

### 사업개요

- **지급대상** | 2인가구 이상 기준 소득수준 90%<sup>1)</sup> 이하 만 0~5세<sup>2)</sup> 아동
- **지급금액** | 월 10만원
- **지급방식** | 현금지급 원칙
- **신청자** | (신청) 아동 보호자<sup>3)</sup> 또는 대리인

- 1) 별도 연구·조사를 통해 제도 시행 전 구체적 기준 확정
  - 2) 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
  - 3) 친권자, 후견인, 그 밖에 아동을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
- \*\*\* 아동수당이란? 2인가구 이상 기준 소득수준 90% 이하 만 0~5세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 9월부터 매월 10만원 지급하는 수당

### 신청방법

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(PC, 스마트폰) 신청

시행일 | 2018년 9월



## 02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

### 무엇이 달라지나요?

구분	종전	변경
아동양육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연령   만 13세 미만</li> <li>• 지원단가   월 12만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연령   만 14세 미만</li> <li>• 지원단가   월 13만원</li> </ul>

### 신청방법

- **신청기관** | 주소지 동 주민센터
- **신청서류** |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

### 사업개요

- **지원대상** | 18세 미만(취학시 만 22세 미만) 자녀를 양육하는 소득 인정액 기준, 중위소득 52% 이하 한부모·조손가족
- **지원내용**

### 시행일 | 2018년 1월

\*\*\*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란? 저소득 한부모 가족(조손가족 포함)의 가족기능 강화, 생활안정도모,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양육비,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

구분	지원조건	지원내용
아동양육비	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4세 미만 아동	자녀 1인당 월 13만원
추가양육비	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아동	자녀 1인당 월 5만원
학용품비	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	자녀 1인당 연 5.41만원
생활보조금	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	가구당 월 5만원

